

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

폐지조례안

(성흠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41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04월 03일

발 의 자 : 성흠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종무, 김평남, 이영실, 이병도,
이호대, 김경우, 임종국, 이태성,
김경영, 홍성룡, 경만선, 이은주,
김태호, 김용연, 봉양순, 이정인,
유정희, 김정환, 김동식, 강대호,
노승재, 김희걸 의원 (22명)

1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는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3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신설('17.10월)하고, 인증기관을 별도로 지정(한국시설안전공단)하여 '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'를 시행('19.3월)하고 있음.
- 이에 기존 '지진안전성 표시제'에서는 표시 발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으나 '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'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없어졌으며,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6조의3 제4항(누구든지 지진안전 인증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)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사항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